

# 정보화추진위원회 규정

제정 2013. 3. 1.      개정 2014. 3. 1.

개정 2015. 6. 1.

**제1조(목적)** 대경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이라 한다) 대내외 정보화추진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5.6.1.>

**제2조(구성 및 운영)** ① 위원회는 전산정보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10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전산정보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전산정보센터에서 담당하며,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전산정보센터 직원을 간사로 둔다. <개정 2014.3.1.>

⑤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학내 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.
2. 대학의 정보화추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.
3. 전산정보센터 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. <개정 2014.3.1.>
4. 학내 전산망 및 전산장비의 도입 및 확장에 관한 사항.
5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.

**제4조(회의)** 회의는 본 대학 대내외 정보화추진에 관련한 심의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에 위원 모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의결)**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6조(회의결과보고)**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하며 총장의 결재를 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